#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4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 송재봉ㆍ이연희ㆍ김우영

이광희 • 황명선 • 김성환

이수진 · 임호선 · 김문수

김동아 · 김남희 · 정진욱

민병덕 의원(13명)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 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

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 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및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 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 아.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 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지원하는 것을말한다.
- 2.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제작·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
  - 나. 대형가속기 빔라인 및 관련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창출 하는 사업

- 다. 대형가속기를 활용하는 연구자 및 산업체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 4.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형가속기를 구축·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나.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및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대형가속기를 이용한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 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연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절차·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 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임대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 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

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관련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 제1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 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

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 1항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① 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ㆍ협력 체계
  - 2. 대형가속기 인력·기술·정보교류 활성화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